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98
----------	-------

발의연월일 : 2021. 8. 4.

발 의 자 : 이낙연 · 이병훈 · 홍성국
정태호 · 윤재갑 · 홍익표
홍기원 · 윤영찬 · 이장섭
서동용 · 오영훈 · 전해숙
김철민 · 박광온 · 양기대
허영 · 오영환 · 설훈
최인호 · 허종식 · 김승남
임호선 · 어기구 · 박정
소병철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증권 매매나 대여를 통해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이른바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책임투자를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고, 적용범위를 증권 매매나 대여를 통한 관리·운용 방법에만 국한시키는 한편, 목적을 안정적인 수익 증대로 귀결시키고 있어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 매매 및 대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금융

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기준 및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목적을 수익 증대가 아닌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규정함으로써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2조,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1호와 제3호 및 제4호”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를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로,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u>고려할 수 있다.</u> ⑤·⑥ (생략)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생략)	----- -----<u>고려하여야 한다.</u>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u>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에 관한 기준 및 방법</u> ② (현행과 같음)
--	--